



대 구 지 방 법 원

제 2 - 3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5노241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 고 인	A
항 소 인	검사
검 사	황수이(기소), 박우성(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현경(국선)
원 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5. 6. 11. 선고 2024고정325 판결
판 결 선 고	2026. 8. 21.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4. 5. 2. 03:12경 구미시 B호텔 C호에서 인터넷 채팅어플인 '앙톡'을 통하여 알게된 D에게 1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D로 하여금 입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애무하게 하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3.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경찰이 작성한 D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 D 작성의 진정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유사성교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당해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당해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채택할 경우에도 적용되는바,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가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피의자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더라도 당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부정되므로 그 당연한 결과로 그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는 사망 등 사유로 인하여 법정에서 진술할 수 없는 때에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인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적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3도718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규정은 그 형식이 진술조서, 진술서, 자인서 등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적용되고(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5



도4202 판결 등 참조), 여기의 공범에는 임의적 공범뿐만 아니라 대항범과 같은 필요적 공범도 포함된다(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6도9367 판결,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3도374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성매매행위는 적어도 2인 이상 서로 대항된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이른바 대항범으로서 필요적 공범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내용 부인 취지에서 위 D이 진술이 기재된 위 각 증거에 대해 증거로 사용함에 동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각 증거는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나. 당심의 판단

검사가 원심에서 제출한 증거들 중 경찰이 작성한 D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 D 작성의 진정서는 원심이 판단한 바와 같이 증거능력이 없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검사는 당심에서 D를 증인으로 신청하여 이 법원이 이를 채택하였으나 증인신문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검사가 지적하는 사정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9-22

재판장 판사 이상균 _____

 판사 김정도 _____

 판사 김성수 _____